

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2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일

3. 제안이유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충청북도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고자 「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대상사무 : 충청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
- 위 치 :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4번지 일원 * 도청 별관 2층(440㎡)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간*

* 근거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- 수탁기관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에 해당되는 자(법인·단체·개인)
- 수탁자 선정 방식 : 공개모집
- 위탁 주요사무
 - 원아모집 및 입·퇴소 관리
 - 보육교직원 채용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

- 보육시간,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- 직장어린이집 내·외부 환경 및 시설물 등 관리
-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건강·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
- 어린이집 운영 관련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
-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【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·운영 계획(안)】

○ 설치계획

- 실시설계 : '24. 10. ~ 12월 / 27백만원
- 인테리어 : '25. 1. ~ 4월 / 431백만원
- 시설인가 : 공사 준공 후 청주시 시설인가(신청 후 14일 이내)

○ 운영계획

- 시설정원 : 영유아 99명, 직원 23명(원장 1, 보육교사 14, 보조 교사 등 6, 조리사 2)
- 보육대상 : 본청·외청·사업소, 의회 직원 및 공무원 자녀(만 0~5세)
- 보육시간 : 07:30 ~ 19:30 * 야간연장 22:00시 / 토요일, 공휴일 제외
- 운영방법 : 민간위탁
- 운영재원 : 도비보조(인건비, 관리운영비) + 정부보육료(관리운영비)

○ 소요예산(안) : 6,210백만원(5년간)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2025년 (7~12월)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비고
계	6,210	646	1,330	1,370	1,411	1,453	
인건비*	4,021	418	861	887	914	941	
운영비**	2,189	228	469	483	497	512	

* 인건비 : 기본급, 각종 수당, 법정부담금, 기타 인건비(기간제 등)

** 운영비 : 일반수용비, 공공운영비, 급식비, 교재·교구 구입, 교육활동 및 행사비, 복리후생비 등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'25. 7월 개원 예정인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.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은 “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”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,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.
- 우리 도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, 위탁보육비 지급해 왔으나, 충북도청 별관 신축으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직원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,
-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가능성,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및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비추어 볼 때,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, 특별한 이견 없음.
- 다만, 본 동의안의 직장어린이집 설치·운영에 있어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9조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제23조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상 위법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.

붙임: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. 끝.